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1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사항 추가	4
2. 중앙지방협력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의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 등	7
3. 일반국민의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참여기회 마련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3. 19.

다. 회부연월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주권시대 구현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중앙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러한 논의의 장으로서 보다 내실있게 기능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

주요내용

가.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및 권한, 사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심의 근거가 없어 국무회의와 같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 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보완하고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포함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그간 안전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에 임의배석함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지 못하여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상정 안전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석·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의장(대통령)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

으로 추가하고, ‘상정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 및 제6조).

라. 현재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배석 가능한 범위는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한정되어 있음. 안전에 따라 일반 국민 등이 배석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배석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 및 제6조).

Ⅲ. 검토의견

1.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사항 추가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사항에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 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 ----- -----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 ~ 4. (현행과 같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u><신설></u>	<u>5.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u>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u>6. (현행 제5호와 같음)</u>

중앙지방협력회의¹⁾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여 2022년부터 설치·운영된 기구로서, ①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②국가와 지자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③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④지자체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입법취지 보임.

- 참고로,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은 없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정책추진사항에 관한 실천계획의 이행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균형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지방간 최고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강화는 필수적이며, 타 법령상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을 협력회의에 상정·심의함으로써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6조(실무협의회) ① (생략)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u>법제처 차장</u> 2. ~ 4. (생략) ③ ~ ⑥ (생략)	--. ② ~ ⑧ (생략)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 법제처 차장, 상정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	--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은 ①대통령, ②국무총리, ③재정경제부장관, ④교육부장관, ⑤행정안전부장관, ⑥기획예산처장관, ⑦국무조정실장, ⑧법제처장, ⑨시·도지사, ⑩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및 ⑪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이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이 경우 대표회장과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함),^⑫ 지방시대위원장이며,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³⁾.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 및 민간전문가 등 회의 참석자에게 회의 개최일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의안을 5일 전까지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함⁴⁾.

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1.>

② 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③ 협력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된다.

④ 의장은 협력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협력회의에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①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는 ①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②교육부차관, ③행정안전부차관, ④기획예산처차관, ⑤국무조정실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⑥법제처 차장, ⑦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⑧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 대표자가 구성원 중 지명하는 각 1명, ⑨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⁵⁾.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2회, 2023년 3회, 2024년 3회, 2025년 1회 개최되었으며,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음.

④ 의장은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1.>

1.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회의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시·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④ 실무협의회회의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실무협의회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현황>

		안 건
2022	제1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 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제2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방안 개정안 2.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3.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4.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2023	제3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2.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3. 중앙권한 지방이양 4.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제4회	1.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계획
	제5회	1.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2.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3.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4.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5.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2024	제6회	1. 의사 집단행동 대응 2.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
	제7회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제8회	1.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2.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4.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5.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
2025	제9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2.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3.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4.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차관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과학기술 산업 관련 사항에 대한 안건 제출 및 의견반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 산업 관련 분야에 관한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안전 제출권 및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⁶⁾.

참고로, 최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AI·반도체·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의 지역육성전략이 논의되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⁷⁾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서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다만,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경우 협력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⁸⁾가 안전별로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참고로 현재는 구성원이 아닌 부처에서 안전 상정을 원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을 취합하여 제출하고 있음.

7)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산업 발전과 지역산업의 성장 간 연계가 중요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 점,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에 포함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3. 일반국민의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참여기회 마련

개정안은 안전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민간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 실무협의회의 참석가능 대상 또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여 일반 국민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및 운영)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u>민간전문가</u> 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⑦ ----- ----- ----- ----- ----- <u>민간전문가</u> 등을 ----- -----.
제6조(실무협의회)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u>민간전문가</u> 를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⑤ ----- ----- ----- <u>민간전문가</u> 등을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대통령)은 안전심의를 위한 경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③관계 공무원, ④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의장이 시·도지사 중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임)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실무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회의참석 대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⁹⁾.

개정안은 협력회의 등의 참석대상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함으로써 정책대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서, 참여민주주의적 수단을 통해 정책의 심의·확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에 따라 회의 운영 과정에서 참석 대상의 선정 기준, 회의의 효율성 및 대표성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참여 인원 규모와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당 등) 협력회의, 실무협의회의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까지 참여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 대상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며,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
